

건강보험 「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」 안내

< 주 요 내 용 >

- ◆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,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**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*** 시행('24.5.20.)
*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2조 제4항 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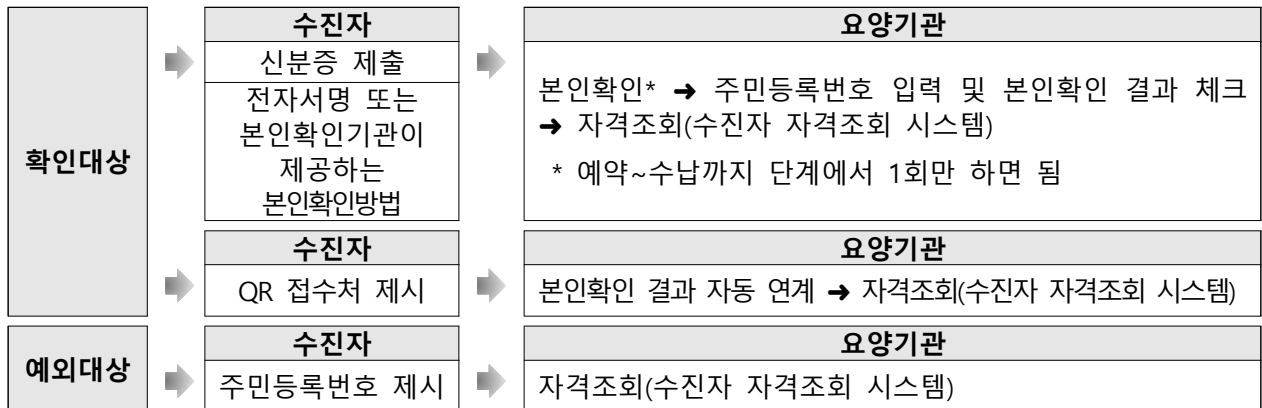
□ 추진목적

-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,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,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중 대여·도용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부당행위를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

□ 본인확인 수단(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제1항)

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모바일 신분증, 건강보험증,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
※ 행정·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등

□ 본인확인 절차



□ 본인확인 예외 대상 (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)

-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
-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
-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
-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
- ⑤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
- ⑥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
※ 법제처 심사 중인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



국민건강보험은 소통과 배려로
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.

h·well

국민건강보험



안전한 의료이용, 본인확인으로부터!

병·의원 방문 시 신분증 등 지참 필수

※ 2024년 5월 20일 시행 (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)

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간단하게 접수하세요!

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
'모바일 건강보험증' 검색 후 설치



QR로 '모바일 건강보험증' 앱 설치
(카메라로 QR 촬영)



안드로이드 용



아이폰 용